

70년대 기자노조파동

1970년대 전반기에 태동하기 시작한 기자노조 결성운동은 결실을 보지 못하고 한낱 파동으로 끝났다. 그러나 한국언론사에 커다란 흔적을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기자노조의 결성 움직임은 70년 4월 22일 한국기자협회 권익옹호분과위원회가 노조결성을 위한 특별기구를 구성할 것과 그 기구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결의함으로써 시작했다.

동아일보사와 한국일보사에서 벌어진 기자노조 결성운동은 '동아 한국 기자노조 파동'으로 불리는데 그 전모는 대략 다음과 같다.

1) 동아일보 기자노조운동

동아일보 기자노조는 1974년 3월 6일 33명의 기자가 참가하여 결성되었다. 이 노조의 결성경과에 대해 기협보(제 302호)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동아일보사기자 33명이 3월 6일 전국출판노조 동아일보사지부를 창설, 7일 서울시에 설립을 신고했다. 기자들은 6일 오후 8시 모처에서 전국출판노조 동아일보사지부 창립총회를 열고 규약(운영세칙), 사업계획서 등을 채택, 조학래(趙鶴來)기자를 지

부장으로 하는 임원 및 집행기구를 구성, 7일 오전 11시 서울시에 노조설립 신고를 마쳤다.

동사 기자들은 창립총회에서 언론인으로서의 신분보장과 최소한의 생활급보장을 위해 노조결성이 시급하다는 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고 노동조합법 등 관계법 절차에 따라 노조를 결성한 것이라고 했다.

2) 노조관계 35명 무더기 징계

동아노조의 탄생은 한국언론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따라서 언론계는 물론 이에 대한 각계의 관심은 컸다. 이에 동아일보는 3월 8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노조에 관계한 기자 35명을 해임·무기정직·감봉처분을 하는 등 징계조치를 취했다.

노조관계 13명의 기자들은 부당 해임 대책위를 구성 항거함으로써 파동이 일어났다. 부당해임대책위의 요구에 경영진은 여러 차례 이사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 「동아일보의 전통상 노조와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노조는 인정 못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노조에 관계한 김병익(金炳翼) 등 15명은 2차 부당해임 대책위를 구성, 「노조를 통한 원만한 노사관계 확립만이 동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지적, 부당해고 철회를 경영측에 촉구했다.

노조지부장 趙鶴來기자는 「우리는 어떤 파국도 원치 않으며 또한 문제를 사외로 과급시키는 데도 명백히 반대한다」면서 「끈기와 이해로써 평화적인 노사협력관계를 이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기본입장을 밝혔다.

해임당한 趙鶴來기자 등 13명은 13일 김상만(金相萬)사장을 상대로 해고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 민사지법에 냈다.

3) 법정투쟁으로 옮긴 노조사건

황인철(黃仁喆)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가처분신청에서 이들 13명은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을 뿐더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적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고, 신청인들이 전국출판노조 동아일보지부를 조직한 행위 역시 위와 같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그들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이유로 하여 신청인들을 해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신청인들은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바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받는 임금만으로 가족과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위 본안 소송의 판결시까지 피신청인의 근로자인 자격을 보유할 수 있도록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만일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될 사정이 있으므로 가처분 결정을 구한다」고 신청이유를 밝혔다(記協報 제303호). 노조 임원 등 13명이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낸 해고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첫 심신(審訊)이 3월 21일 오전 11시 서울민사지법 212호 법정에서 민사지법 합의 91부 재판장 김덕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심신에서 노조측은 소명자료로 △ 3월 8일자 기자협회보 △ 전국출판노조 인준필증 △서울시의 노조신고접수증 △ 해고사실을 보도한 AP통신기사 등을 냈다.

이에 사용자측은 답변서를 냈다. 사용자측은 답변서에서 해고이유를 「사규와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3월 28일, 趙鶴來기자 등 19명과 무기정직된 이종대(李鍾大)기자 등 6명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3월 13일, 2차로 해임된 권근술(權根述)기자 등 6명과 무기정직된 김영일(金永日)기자 등 6명도 추가 가처분신청을 3월 27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냈다.

이같이 법정으로 번진 동아일보사의 기자해임사건은 회사측이 인사조치한 35명에 대해 4월 13일자로 사면·복직시킬 것을 공표함으로써 수습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金相万사장은 4월 12일 특별담화문을 통하여 「지난 3월 8일, 3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있었던 징계는 4월 13일자로 향후 이를 모두 사면한다」고 밝히고, △ 노조명의를 일체연동 △ 유인물 배포 및 집회를 엄금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동아노조가 3월 7일자로 접수시킨 '노조설립 신고서'를 접수한 지 30일이 경과한 4월 5일 동아노조지부장 趙鶴來에게 반송했다.

서울시의 신고서 반려이유는 「노조의 임원 전원이 현재 동아일보사에 재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뿐이었다.

노조측은 6일 회람 제13호에서 「서울시의 신고서류 반려이유는 불법적인 것으로 노조결성 및 신고는 해임조치 이전에 이미 행해진 법률행위이므로 노조결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반박, 4월 16일 서울시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또 상급기관에 소원(訴願)을 제출, 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노조결성으로 한 달여에 걸쳐 벌어졌던 이른바 동아의 '기자노조파동'은 노조측 간부와 金相万 사장간에 면담이 이루어짐으로써 사내의 갈등은 해결의 전망이 밝아졌다.

趙鶴來지부장 등 조합임원 4명은 4월 16일 노조파동 이후 처음으로 金사장과 면담을 가졌다. 金사장은 이자리에서 「이번 사태는 불행한 일로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경위야 어떻든 3월사태로 인하여 앞으로 인사문제나 기타 문제에 있어 어떠한 제재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노조측은 「그동안 회사가 취한 일련의 조치는 무엇보다 우리들의 진정한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때문이라고 본다. 앞으로 사원들의 진정한 의사가 전달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필요하다」고 노조측의 입장을 밝혔다.

동아노조는 5월 4일 국무총리 앞으로 소원을 제출했다.

노조측은 7월 11일, 설립신고를 반려했던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 특별부에 제기했다.

서울시를 상대로 노조가 일으킨 「설립 신고 반려 취소처분」행소(行訴)는 이 해 10월 30일, 제9회 공판을 시작으로 13회에 걸친 공판 끝에 75년 9월 29일 선고공판(제13회)에서 원고 패소로 마무리되었다. 서울고법 특별2부의 판결이유는 「서울시가 확인한 바 노조측 간부들은 74년 3월 8일 해임되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서울시의 조치는 적법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판결에 불복, 10월 1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80년 3월 11일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다」고 기각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노조의 행소는 패소로 막을 내렸다.

4) 한국일보 기자노조운동

한국일보사 기자노조는 1974년 12월 10일 전국출판노조 한국일보사 지부설립 신고서를 서울시에 접수시켰다.

동아노조에 이어 두번째로 결성된 한국일보 기자노조는 한국일보기자 31명이 참가했다. 지부장에는 이창숙(李昌淑)기자를 선출했다.

한국일보사는 노조가 결성된 10일 밤 이창숙지부장 집으로 해임통지서를 우송하고 이어 해임통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11일자로 발송했다.

내용증명은 이창숙기자가 5일자 인사 이후 아무런 통고없이 출근하지 않아 9일자로 해임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출사(出社)하여 출근하지 않은 그동안의 사정을 회사측에 해명하고 그 해명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복직도 고려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회사측은 또 10일 밤 외신부기자 9명에 대해서도 각각 집으로 경고장을 우송, 10일까지 출근하거나 무단결근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징계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회사측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李昌淑지부장은 12월 18일 장강재(張康在)사장을 상대로 해고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제출했다.

李昌淑지부장은 실제로 해고를 결정한 것은 한국일보 기자노조가 서울시에 설립신고를 마친 12월 10일 오후 4시 이후인 이날 오후 6시에 긴급소집된 국장회의 뒤의 일이다. 「통금시간 중 인 11일 새벽 0시 30분에 통지서를 발송하면서도 굳이 12월 9일자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노조 간부인 본인에 대한 해고 의사표시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은폐하려는 저의하에 고의로 일자를 소급하여 해고 사실을 정당화하려는 기도였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노조조합원 11명은 12월 21일 李昌淑지부장의 부당해고를 철회시키기 위하여 같은사 李炳日 기자를 위원장으로 부당해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李昌淑지부장의 해임은 노조설립과 관련된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 이의 즉각 철회를 회사측에 요구하는 한편 앞으로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인사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노조측은 75년 1월 8일 李昌淑기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라는 명령을 구하는 구제 신청을 서울특별시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한국일보노조가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를 75년 1월 6일자로 반려처분했다. 서울시는 △ 노동조합 규약기재 사항 중 해산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었으며 △ 노조대표자인 지부장 李昌淑기자는 74년 12월 9일자로 해고되어 조합조직 이전에 한국일보사에 재직하고 있지 않았으며 △ 노조임원인 부지부장 신상석(申相碩)기자는 일간스포츠 레저부기자로 한국일보 본사에 근무하는 기자가 아니라는 등 세 가지를 반려이유로 들었다.

李昌淑기자가 제기한 해고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은 12월 26일 오후 11시 서울민사지법 합의 16부(재판장 金德柱부장 판사주심 盧京來판사) 판사실에서 피신청인측 소송대리인 안명기(安明基) 변호사와 신청인측 대리인 홍성우(洪性宇) 변호사 입회로 첫 심신(審訊)이 있었다.

노조측은 張康在사장을 상대로 노조지부장 李昌淑기자 해고효력 무효확인 소송

을 2월 26일 서울민사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서울민사지법 합의 16부에서 심리하여 온李기자에 대한 해고효력정지 가처분신청사건도 본안 소송 담당재판부인 합의 8부(재판장 裒滿雲 부장판사)에서 병합 심리하게 되었다.

더불어 노조측은 4월 10일 서울시를 상대로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했다.

그런데 한국일보 노조는 항소제기에 앞서 75년 1월 30일 서울시의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원(訴願)을 국무총리실에 낸 바 있었는데, 총리실은 3월 20일 서울시가 결격사유로 지적한 첫 번째 사유는 반려이유가 못되나 둘째, 셋째 사유는 서울시의 주장이 옳다고 소원을 기각했다.

노조결성을 계기로 빚어진 사태는 회사측과 노조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법정에서 대결하게 되었다.

李지부장에 대한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은 75년 4월 9일 첫공판이 있는 이후 76년 2월 1일의 5회공판에서 민사본안소송과 가처분을 분리 심리키로 되어 진행되었다. 가처분심리는 3월 8일의 3회공판에서 기각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이 사건은 9월 24일 항소심 3회공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써 원고 패소로 끝났다.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은 9월 15일 6회 공판에서 기각판결을 받고, 같은 달 23일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이 항소심은 77년 1월 13일 제2회 공판에서 기각판결을 받아 2월 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8월 23일 상고심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이 사건은 일단 원고측이 승소했다.

그러나 78년 6월 30일에 있는 고법선고는 기각이 있었다.

李지부장측은 고법선고에 승복하지 않고 제2차로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의 재심은 80년 9월 30일 상고기각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결국 원고측이 패소했다.

이와는 별도로 75년 1월 8일 서울시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李지부장에 대한 구제신청이 5월 27일 기각판정을 받아 노조측은 6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역시 기각판정(11월 14일)을 받게 되어 노조측은 76년 3월 24일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일으켰다. 이 행정소송은 이해 10월 27일 기각판결을 받았다.

한편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은 76년 7월 14일 고법에서 기각판결을 받아 이해 8월 1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행정소송은 79년 12월 11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 일단은 원고 승소로 되어 소송은 다시 고법으로 환송되었다.

고법에서의 재심공판은 80년 4월 23일 첫공판이 있었고 5월 14일 제2회 공판이 있었다. 이 재심공판은 81년 7월에 들어서 원고인 노조측이 李昌淑지부장 명의로 「소송절차 중단신고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러 소송은 현재까지 서울고법에 계류된 채 있다. 따라서 노조설립의 합법여부를 가리는 법적 최종판정은 아직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다.

7년여에 걸친 노조측의 끈질긴 투쟁은 80년의 5·17사태로 한국일보노조 잔존 간부 대부분이 퇴사하게 됨으로써 한국일보사 기자노조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다.